



최저임금제도 개편,  
이것이 궁금합니다.



#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?

- ✓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.
- ✓ 임금항목의 지급 주기나 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.



#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보호되나요?

- ✓ 연간 중위임금(약 2,500만원)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.
- ✓ 저임금노동자의 대다수는 **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**을 받거나, **적은 금액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**를 받고 있습니다.
- ✓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(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)를 받더라도,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 일정금액만 포함됩니다.



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 
각 25%('18년 기준 39만원), 7%('18년 기준 11만원)를  
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.

#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는?

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 
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.



〈기본급〉

최저임금에  
포함되는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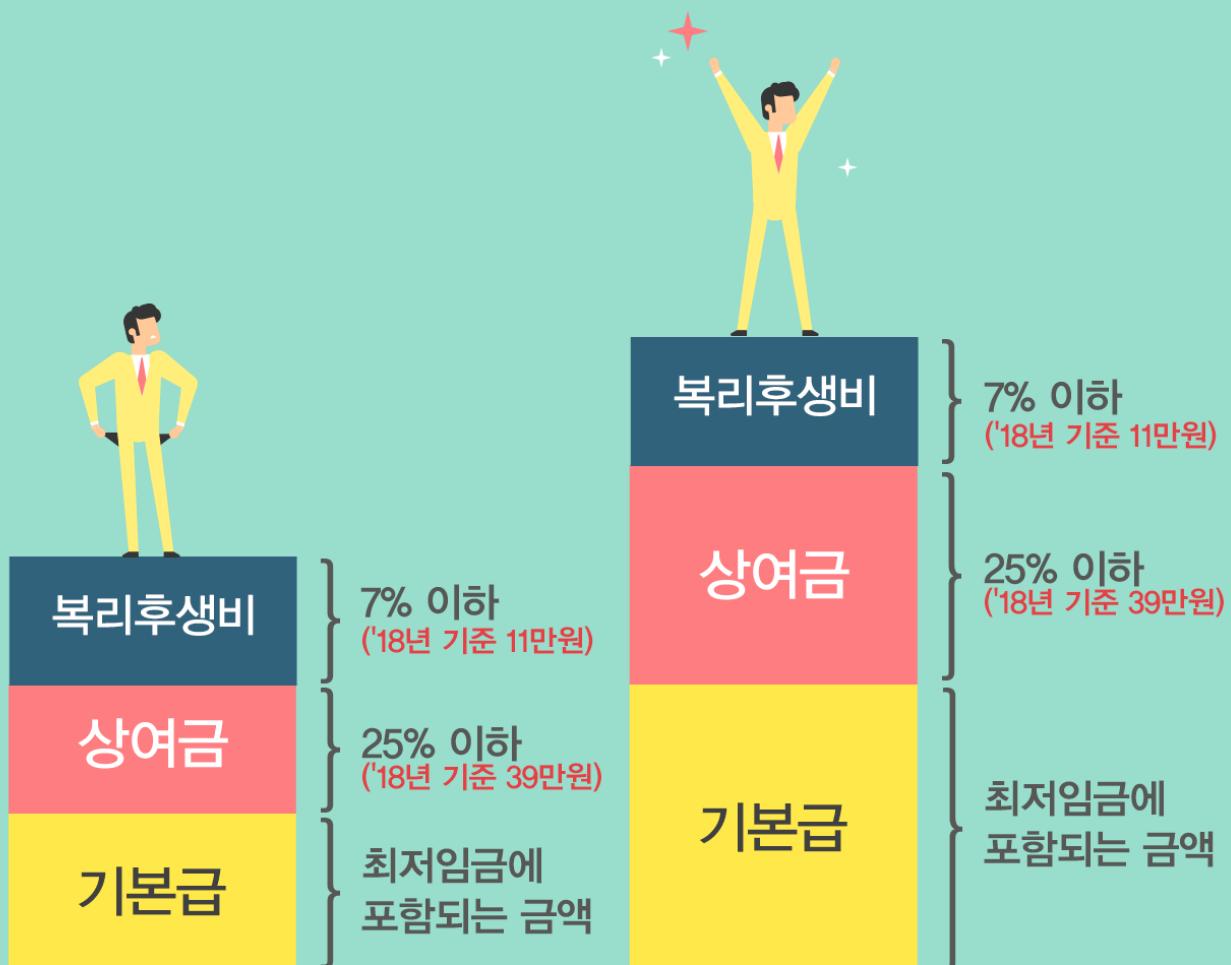
〈기본급〉

최저임금  
인상분

최저임금에  
포함되는 금액

#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%, 7%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는?

- ✓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 
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.
  - 지금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 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.



#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나요?

- ✓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%(<sup>18년 기준 39만원</sup>)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%(<sup>18년 기준 11만원</sup>)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

25%, 7%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,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

그러나, 이 경우에도 임금은  
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

##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 
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 
연간 중위임금(약 2,500만원)이하  
노동자를 위해 임금이 보장되도록  
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.